

# 「개별소비세 신고 도움 서비스」

본 자료는 개별소비세 신고안내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신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동차대여

### ▣ 신고 기본사항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자동차대여사업자 시설대여업자	5년내 양도 또는 용도변경한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최초의 반출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용도변경시 세율과 구입 당시 세율 중 낮은 세율

- (동일용도 재반출) 개별소비세 면세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양도(면세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면세로 신고  
- 동일용도 재반출 시 다시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면세반출신고서'와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제출 (홈택스 신고 시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생략)
- (용도변경)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보아 신고납부  
- (수출) 면세승용차를 수출한 경우 용도변경으로 보아 신고납부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반입연월일부터 용도변경연월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잔존가치율을 적용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

####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용도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4년 이하	4년 초과 5년 이하	
영업용	0.779	0.618	0.348	0.196	0.100	
비영업용	국산	0.826	0.725	0.614	0.518	0.437
	외산	0.842	0.729	0.605	0.500	0.412

\* 영업용으로서 6개월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

- (신고방법) 양도일 또는 용도변경 사유일(동일인 등에게 대여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차대번호별로 「총판매(반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

#### ※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대상인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 [(반출가격 × 취득당시 세율 - 감면세액) ÷ 취득당시 세율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세율 = Min(용도변경시 세율, 면제받을 당시 세율)

▣ 주요 세법해석 사례

업종	분야	세법해석 요지	문서번호
자동차대여업	구입시 면세절차	<p>○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절차</p> <p>-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p>	소비46430-2431 (1995.12.27.)
자동차대여업	신고대상	<p>○ 조건부면세 승용차 반입 후 5년내 수출하는 경우</p> <p>-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p>	재소비46016-10086 (2001.09.01.)
자동차대여업	신고대상	<p>○ 영업용승용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p> <p>- 특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는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구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초 면세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p>	소비46420-476 (1999.09.20.)
자동차대여업	신고대상	<p>○ 조건부면세 대상</p> <p>- 승용차 렌터카업을 하는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를 개인차주들이 자가용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p>	국심2001부0264 (2001.04.03.)
자동차대여업	신고대상	<p>○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물품의 양도시 추징 여부</p> <p>-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사업용 승용차를 면세승인 절차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됨</p>	국심2000구3130 (2001.05.16.)
자동차대여업	세액계산	<p>○ 조건부 면세받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징수방법</p> <p>-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 사업용으로 반입 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 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반입 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개별소비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과세가격 [(취득가격×세율-조세특례제한법§109에 따른 감면세액)÷세율×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세율</p> </div>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203 (2010.04.16.)